

KT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KT노동조합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강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김범(02-2272-7114)

2004년 연, 월차휴가(월정, 보건휴가 포함) 사용관련 실태 결과조치

노동조합은 연월차 휴가 및 MNP판매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다는 조합원의 불만이 접수되자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복무운영 관련 ▲연, 월차휴가 부여후 근무시킨 사례(반납) ▲월정, 보건휴가 미부여후 반차휴가 처리 사례 ▲연, 반차휴가 일괄승인 등 부당사례를 확인했으며 회사에 강력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회사는 연차휴가 등 복무운영 제반에 걸친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항후 발생치 않도록 보완 문서(인력 22703-429 2004.4.27)

를 현업에 지시했으며, 항후 직원 본인이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관련직에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노동조합에 통보해 왔다.

또한,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금회에 헌하여 각국별 부당 처리한 실적은 긴급 파악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키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지부, 분회장께서는 조합원 복무부 및 근무사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헌명의 조합원도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측 파악 사례

- 1) 연, 월차 휴가 부여후 근무시킨 사례
- 2) 월정, 보건휴가 미부여후 반차휴가 처리 사례
- 회사측 파악기간 : 2004.4.30
- 별도 파악후 조치 사유
- 1) 복무시스템상 원상회복 불가 : 관련 자료 예려 우려
- 2) 실태조사 지부 외 다른 지부도 유사사례 예측
- 각 지부(분회)별 확인 및 감시처 : 조합원 복무표 확인 및 근무사례 확인(기간 : 2004.1월 ~ 현재까지)



5·1절 노동자대회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과 평양에서 동시다발로 열려

5월 1일 제 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기념 집회가 열렸으며 민주노총은 이라크 침략 전쟁의 고통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FTA 농업개방과 구조조정 중단, 주5일근무 전면적용으로 일자리를 늘립 것을 요구했다. 또한 6월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 “군경력퇴직금 환급 상고 기각”

법무법인 검토의견 “사용자를 우위에 두는 대법원의 법해석”

대법원이 16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원고(박성갑외 4525)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에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대법원 판결문 요지

대법원은 2004. 4. 16. 한국통신 노동자들 종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 전부로 산입받지 못하고 2분의 1만 산입받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노동자들이 한국통신을 피고로하여 위 군입대기간을 전부를 퇴직금의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들인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비록 한국통신의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에는 군복무기간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광무원재직기간으로 산정한

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 한국통신이 보수규정을 개정할 때 변경된 광무원연금법 규정을 간과하고 종전 규정을 잘못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한국통신이 노동자들에게 군복무기간 전부를 퇴직금으로 산정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파소원인 분석

종래 대법원 판례는 보수규정은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문언을 증명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왔었습니다. 위와 같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현행 한국통신의 보수규정도 그 문언상 군복무규정 전부를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

서는 유독 보수규정의 문언보다는 사용자인 회사측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여 원고들의 입금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법원의 보수성 또는 근로자를 보다는 사용자를 우위에 두는 법해석의 입장에 있다고 밖에 날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를 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대법원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아무 근거없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가능성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므로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현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달리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2003년 특별명예(희망)퇴직자 재취업 세부사항 결정

상근, 비상근 본인 선택해야…

작년 단체교섭의 이후 노사간의 합의로 시행했던 특별명예(희망)퇴직의 후속 조치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의 합의사항의 세부내용이 노사간에 결정됐다.

작년 특별명예(희망)퇴직 시행시 노사는 퇴직자에게 재취업을 회피하는 경우에 1년간의 퇴임(정보통신 설계사 등)을 보장하며, 1년 퇴업보장에 있어 실적보상금 외에 기본 보수수준은 년 2,000만 원(월 166만원정도)으로 하되 상근하여야 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합의사항 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노동조합은 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자들의 재취업의 세부내용을 노사간에 결정했다.

KT S.C(Sales Consultant) 모집

○ 자격요건 : 2003년 10월 특별명예(희망)퇴직자 중 회방자

○ 신청기간 : 2004.4.30 ~ 7.31 18:00

- 2004.4.30 ~ 5.7 18:00 신청자 : 5.1

일자 계약/활동

- 2004.5.8 ~ 7.31 18:00 신청자 : 8.1

일자 계약/활동

○ 접수장소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KT 영업총국

- 영업지원부 영업관리과 S.C 담당

○ 제출서류 : S.C 신청서(영업관리과

배치, 1부), 이력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 위탁업무

- 관내 제반 시장조사 및 KT 서비스

에 대한 제반 모니터링

- 멀도로 징하는 상품의 판매 및 제반

관련 업무처리

- 기타 KT 재직시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한 KT이익 제고 활동 등

○ 판매 위탁 상품 : KT-PCS, Megapass, Nespot 등 3개 상품

○ 위탁업무 수행 형태 : 아래 2가지

(1) 중 배 1

- 1년 : 매일 모전/오후 위탁업무 수행 회의 참가

지정된 장소에서 8시간 위탁업무활동, 월 166만원 지급

- 제2간 : PCS 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MNP/신규/보상기변: 보상기변은 월 1대까지)

판매대수	처금금액	판매대수	처금금액
0대	146만원	4대	188만원
1대	158만원	5대	198만원
2대	166만원	6대	206만원
3대	176만원	7대	216만원

원 1회 위탁업무 활동실적서 제출

- 영업국 회의참가 등 의무 없음

월 2회 교육참가시 교통비 5만원 지급(한석의부는 없음)

- 2개월 연속 판매실적 없을 시, 경고 1회 부여

1월 이상 업무수행 실적서 미제출시 경고 1회 부여

▶ 경고 3회시 계약 해지

- 판매 우수자 포상 및 장려금 지급 (규모 및 세부기준 추후 결정)

▶ 연 2회 부부동반 해외여행, 분기별 우수자 관광장비금 추후 결정)

- 기타 매거진, 네스팟, 보상기변 판매 수수료 별도지급

당당한 노동조합 300호 이벤트 당선작

지부소식지 대상 - 본사지방본부 IT본부지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일일 소식지 '당당한 노동조합' 300호 발행 기념 이벤트 결과가 발표됐다.

지부별 소식지 만들기

■ 대상: 본사지방본부 IT본부지부(지부장=임종태)

■ 우수상: ▲ 강북지방본부 전신국지부(지부장=이영구) ▲ 충북지방본부 가경지부(지부장=서광원)

■ 장려상: ▲ 강북지방본부 무선국지부(지부장=홍의표) ▲ 강남지방본부 강동지부(지부장=여상훈) ▲ 부산지방본부 대

연지부(지부장=배영수) ▲ 강남지방본부 강남망운용국지부(지부장=이종철) ▲ 부산지방본부 미남지부(지부장=고원배) ▲ 강남지방본부 양재지부(지부장=김성락) ▲ 대구지방본부 경북복부망 구미지부(지부장=박병규)

나도 한마디 기고

■ 최우수: 정영근(강남지방본부 경기동부망운용국지부) -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 우수: 강민관(충남지방본부 서천지부) - 조속한 종업원 지주제 도입을,



■ MyKTTU는?
-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고도 조합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 매일 오전 9시 조합소식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권장사항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98/ME 2000/XP
※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이상

노동조합이 'MyKTTU'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여러분과 더욱 친숙한 의사소통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접할 수 있었던 노동조합 소식이 하루 한번 조합원 여러분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지금 바로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에 접속하십시오. 단한번 동의로 'MyKTTU'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의 의의와 역할

일방적인 기업중심의 정책을 막을 수 있을 것



당선예상자가 발표되자 민주노동당 후보들과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임 것이다. 모 신문 민평판에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열린 우리당 보다도 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한다.

관심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 그 것은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로 인해 정치에서 사회 전 분야에서 특히 노동관련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본다.

혹자는 과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별 역할이 없듯, 숫자상으로 늘어났지만 10명의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한다.

과거 노동계 출신의 개별 원내진출과 민노당 원내 진출은 다르다.

과거 노동계 출신의 원내출신과 급변의 민주노동당 원내 출신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중도)보수 정당의 협

조를 얻어 1~2개의 의석에 진출한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당당히 정책을 갖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의석이다.

당연히 그 목소리의 질이나 크기가 전혀 다르다.

정부나 국회에서 자본가 입장의 일방적 관철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 각종 입법과정에는 거의 기업주들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심지어는 98년 노동법 개악 저지부쟁을 통해서 노동법을 다시 개정도록 하였지만 국회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개안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 즉 추운 겨울 내내 거리에서 투쟁을 했지만 국회내의 입법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최소한 반 노동자적인 정책의 강행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높은 사람은 충분히 유리한 정책으로 입법화 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비정규 문제, 노사 로드맵,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것이다.

유리한 정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 노사 로드맵,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을 것이다. 물론 국회 내에서

는 소수정당이기에 입법화시키기 어렵다 고 하더라도 민노당의 진출은 정부의 기존 노동정책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또한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산별 교섭 등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인해 커진 노동계의 정치력은 노정관계, 노사관계의 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글 부상은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치적 위상을 변화시켰고, 그동안 한국노총은 파트너로 유지하고 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계의 실질적 대표세력으로 한층 부상한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변화와 운영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아직 자본가들의 우려가 많겠지만 점차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섭 구조에서도 차라리 기업별교섭 보다는 산별교섭을 통해 합리적 문제 해결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투쟁 방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정교섭, 노사 교섭 등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의 집회 및 파업 부쟁 중심의 활동이 변화될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부쟁이 외에는 노동자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었고 또 오직 부쟁만이 권한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높아진 정치역량을 통한 여론화를 통해, 그리고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에 그만큼

부쟁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민노당 내부의 정책 역량 강화와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활동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인한 변화는 한편으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을 압도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과거의 반대로서는 이를 관철할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과 민노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외곽부대로서의 민노당도 아니고, 민노당의 동원부대로서의 민주노총이 아닌 각자의 위치와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립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주적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노당의 원내진출 등에 일부 적극적인 간부들도 있었지만 KT노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런 확인된 가능성이 우리 KT노동조합의 주동적인 역할이 모아진다면 그 결과는 권영길 대표가 말하듯 차기 선거에서 제1야당, 8년후에 민주노동당의 집권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신임 정책기획실장 서리 인터뷰

“현장의 시각과 정서 반영할 것”

3월 31일 중앙본부간부에 대한 소폭 개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내부에서 자리를 옮겨 조직의 협력을 기한 것이다. 이날 새로이 정책기획실장(서리)에 임명된 김화식 전(前)산인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조합원과 만남의 자리 마련했다.

<편집자 풀이>

1. 먼저 정책기획실장(서리)에 임명된 소감을 한마디.

– 8대 집행부는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노사관계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그 중대한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할 정책기획실의 책임자들답게 된 것에 대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저에게 정책기획실장(서리)을 맡긴 것은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책기획실에 있는 우수한 국장들의 능력을 믿고, 저는 이들이 생산해낸 정책을 현장의 눈으로 다시 짐작하여 현장성 있는 정책, 조합원에게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2. 정책기획실의 향후 주요한 사업 과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 그동안 정책기획실내 산업안전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국장이었을 때의 시각과 실장(서리)으로서의 시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실장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다시 짐작해보고, 향후 과제를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되었기에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시급한 것은 2004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단체교섭은 예년과 달리 현금 인상과 ESOP 부상 출연요구도 포함하고 있어 그 만큼 새롭게 준비할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교섭도 병행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법 조항이 애매한 사항이 많고, KT의 경우 근부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부 학자와 종부간부들이 결합하여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정된 노사협동 대토론회 준비도 소홀할 수 없는 일입니다. 8대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측에 요청한 것이 노사협동 대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8대 집행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사측의 정책에 반대만했던 방식은 벗어나 노동조합이 협업의 문제를 포함하여 KT전반의 문제에 대해 짐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노동조합은 문제점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시각에서 조합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말이 있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상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사외이사 추천 등은 급변 집행부 임기내에 실현되지 못하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미래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 믿음을 갖고 미래를 지향하며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KT노동조합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설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5월 1일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가 서울 대학로를 포함 전국 13개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라크 침략전쟁에의 파병철회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FTA 능력개방과 구조조정 중단, 주 5일근무 전면적용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6월 16일 모두가 함께하는 부쟁, 6월 30일 상반기 부쟁, 임단부 부쟁을 해나갈 것”이라며 6월 집중부쟁을 선포했다.

43년만에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폐지를 이룬 민주노동당 권리길 대표는 죽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이땅의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드디어 올랐다. 민주노동당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 선배들의 피와땀과 눈물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이 이 자리로 이끌어온 노동자, 농민, 빈민, 동지 여러분이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 대표는 “이땅의 노동절은 죽제의 장이 아니라 편안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부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열 명의 의원들이 요구한

과제들을 차례로 보고했다. 특히, “무엇보다 파견법은 철폐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동자 정착선언 한마당에서는 지난 4.15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로 출마했던 57명이 연단에 나서 인사말을 전했고 민주노동당 친가가 올려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열 명의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을 대표해 최순영 당선자는 “합법적 부쟁의 공간인 국회의 사당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제1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노동절대회 참가자 일정은 결의문을 통해 ▲파병철폐 ▲차별철폐 · 정규직화 ▲노동3권 · 건강권 행위 ▲신자유주의 반대 등의 의지를 밝혔다.

KT노동조합도 수도권 노동조합 간부 150여 명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 집회에 참석해 노동절의 의의를 되새겼다.

전북본부의 조합원 사생활 침해와 직무감찰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반인권적 사생활 침해와 개인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KT전북본부가 노동조합활동을 한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보발령한 뒤 사생활을 감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측은 직부를 계약화한 직원에 대해 정당한 직무감찰 활동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KT는 강제상품판매, 사생활 침해 등 사내의 불만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성이 있고 있으며, 사측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KT 내부의 불만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증거이며,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KT는 국민들로부터 부패와 인권침해 등 악덕기업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내란이 가장 부서운 적’이라는 옛 성인들의 말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쟁점 사항>

주5일인가 vs 주40시간인가

KT는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사업장으로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5일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시 기한만 정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2004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그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법정근로시간단축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은 안되고, 업적한 요건 아래에서만 초과근로(시간외 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달리 기준근로시간이라고도 하며 연장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하여 휴일여부, 유급보장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것인가(당일임금의 100%+연장근로수당50%+휴일근

로수당50%),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될 것인가는 논란이 있다.

현재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은 주40시간 근무제는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설계,

도입되어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은 누적된 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가활동,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임금보전

주5일근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봉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 4조 ①항이 효력규정(강행규정)이나 선언적 규정이나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현재 노동부나 국무총리실은 선언적 규정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결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앞서 노동계와 제3자에게 가장 큰 논란은 벌이고 있는 것이 보전해야 할 '임금수준'의 의미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첫번째 견해로 부칙의 규정이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 보전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종액기준으로 이법 시행이전 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서 이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는 지침을 시달렸다.

경총은 단체협정에 노조가 협력할 경우 4시간의 임금보전을 실시하되, 시간당 봉상임금 인상 등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며 임금보전시 시간당 봉상임금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고 봉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조점(복별)수당의 신설을 통해 보전해주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임금보전을 시간당 봉상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사용자들의 휴가제도 변경요구는 반드시 '선 임금보전'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및 할증률 인하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복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은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은 이를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은 이를 '100분의 25'로 한다.

할증율 25%의 적용대상이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을 유지할 때의 연장근로인 4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1주 4시간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 의하면 25% 할증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3년간 1주 16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실시하는 연장근로'로 제한해 명시하고, 연장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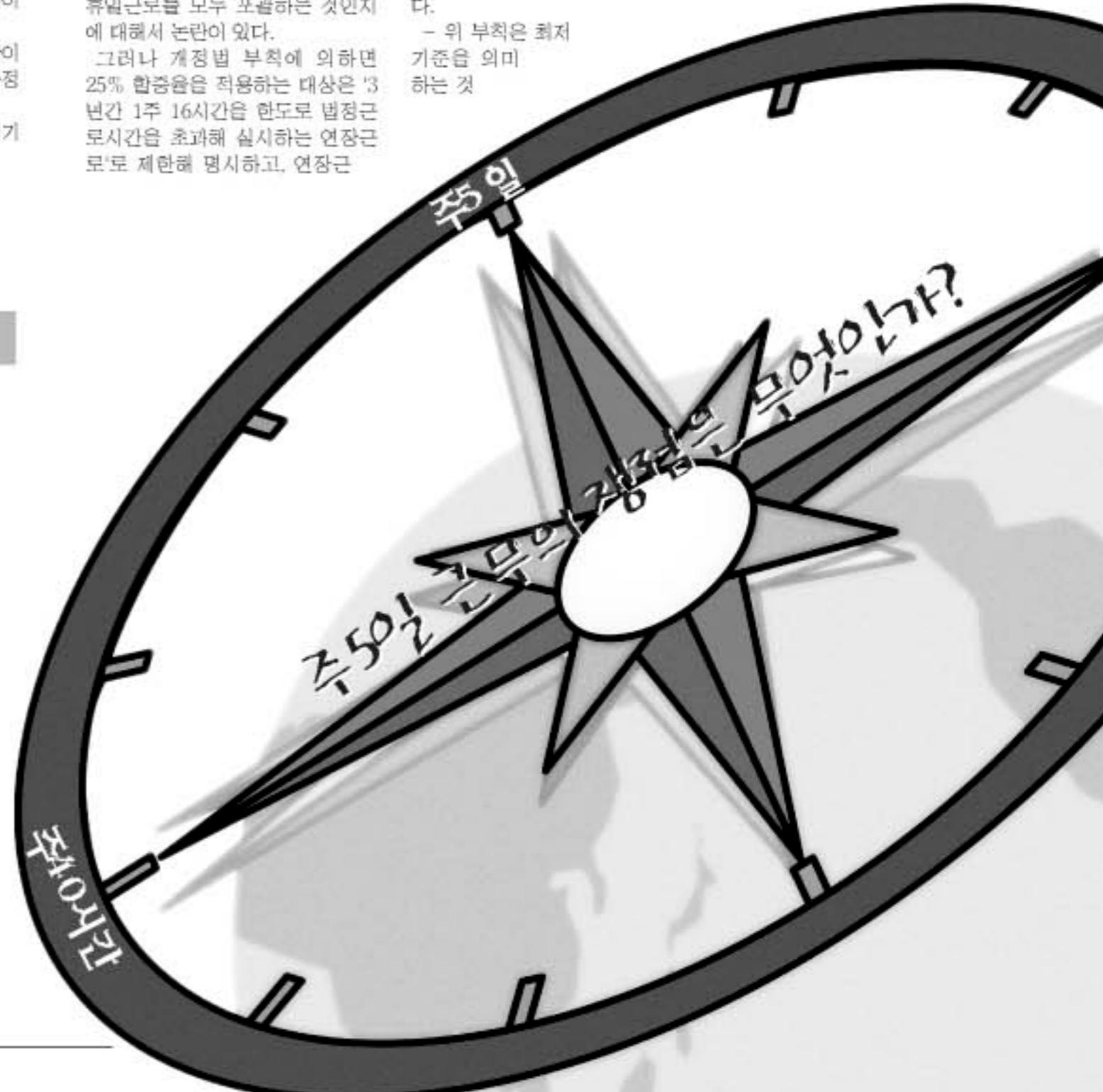
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별개의 근로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연장근로 4시간분 외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할증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경총지침

-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규정치 않도록 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벌에 따른다" 정도로 규정해 놓는다.

노동계지침
-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바로 반영되도록 할증임금을 기준대로 유지(50%)하고 연장근로 상한선도 12시간으로 명시한다.

- 위 부칙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는 것



2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조정 및 사용촉진제

개정법은 ▲월차휴가를 폐지 ▲연차휴가를 8회 이상 근무시 15~25일 부여 ▲2년당 1일씩 가산 ▲▲년 미만 근속자는 1월 개근한 경우에 1월당 1일을 부여하되, 나중에 이미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을 끝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에서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휴가에 대한 조치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이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고, 10월 31일까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기간외의 다른 날에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법상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간 단축분 만큼의 임금을 감액토록 한다.
- 조정 폐지되는 연원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차감한 후 보전하도록 한다.

노동계지침

- 현재의 연원차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는 경우 전제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 휴가 사용을 위해 인력충원 요구 한다.

- 연원차 휴가의 폐지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축소분 만큼 임금이나 수당으로 보장받을 것.

-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할 것.

-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3

단체협약 변경의 문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며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종전 법에 의한 연원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 및 합동률, 단체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연원차휴가는 근로기준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휴가일 수도 변경된다. 단 법이 개정되거나 개정법이 적용됨 경우 다시 정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연·월차휴가를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전의 연·월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령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함(1997.8.4. 노조01254-688)

노동조합 제1차 상집수련회

2004년 세부사업계획 토론 및 공유



노동조합은 4월 8일 2004년 제1차 중앙 상집 수련회를 열고 각국별 세부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직원복무및보수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넓혀주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조합은 양보하거나 합의해줄 것이 없다" 끝나 말했다. 또한 중앙상집에게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 한층 긴장의 고비를 죄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계획 공유후 2004년 인단협 승리와 조합간부의 부임을 기원하는 행사(고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각국별 대략적인 사업계획이다.

■ 사무처

△ 사무국: 부명한 노사관계 방안 모색, 교섭의 불신해소, 교섭우위확보를 위한 전술개발, 상집간의 화합 및 신뢰강화
△ 재정국: 전시위주 행사지향, 사업계획 협의 검토, 사업의 실효성 확보, 재정자립

기금 지속 추진

△ 복지1국: 원전복지구현(교육비, 복지시설, 보육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지후생사업 추진(의료혜택 등), 일상활동 강화
△ 복지2국: 우리사주조합 직전제, 광기 노사협의회 활성화, 인사·보수제도 개선 운영방안
△ 법규국: 규약 및 규정개정, 부당노동행위 예방, 각종 소송지원, 노동법 실무교육, 법규정 적용사례

■ 정책기획실

△ 기획 관리국: 노사대토론회 개최, 2004년도 일년간 준비, 중앙상집 토론회 개최, 2004년도 사업실적 분석
△ 정책1국: 사외이사 추천 사업결과 보고,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및 일상적 경영 참여, 공정한 상품판매 제도 개선, 신상품 및 사업분석
△ 정책2국: 고용안정성 이행 강제, 고용안정위원회 활성화, 주5일제 요구안
△ 정책3국 산업안전국: 유급휴식년제

시행, 직장단체보험 가입요구, 근골격계 예방 활동, 산재관련 일상활동, 각종설문조사 자료조사

■ 조직처

△ 조직1국: 전국상집간부 수련회 개최, 노동조합 조직진단, 일상활동
△ 조직2국: 2004년 단체교섭 대비 각종 대회행사 준비, 교육국과 연계한 지부 부서장 및 지부임원 조직역량강화, 각종 행의 시 전술계획 수립

△ 조직3국: 조직관리 D/B 프로그램 운용 주관, 2004년 단체별 투쟁계획 수립

△ 여성국: 상반기 지방본부별 여성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여성국장 수련회, 전국 지부 여성부장 수련회, 봉사활동, 연대활동 강화, 여성할당제에 대비한 여성 조합 간부 밤금

△ 대외협력국: 국제 노동단체 연대사업 강화, 업종 종별 교류협력사업 확대, 시민 일반단체 유대강화 및 지원사업, 정치 세력화 조직 강화, 동일사업 교류 확대 및 실현, 장기부쟁사업장 지원

■ 교육선전실

△ 교육국: 전분강사단 훈련, 지부장 분회장 역량강화 교육, 지방본부 권역별교육,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중앙상집 수시교육, 전국지부 부서장 교육

△ 편집1국, 2국, 선전국: 일일 소식지 발간, 주간 KTTU 활성화, KT노보 특보 발행 활성화, 언론기자와 연대강화, 온라인 매체의 가능 활용 강화, 홍보를 전달체계 정비 및 수시집검

△ 국제국: 세계화 반대투쟁 결합, WTO 반대투쟁 결합, 국제교류사업 확대, UNI 연대사업 적극 결합, 세계봉신노조와 교류사업 추진, 연맹의 국제사업 지원

김낙성동지 제10주기 추모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시다 순직하신 김낙성 동지 제10주기 추모제가 화랑한 날씨 속에서 60여 명의 가족 및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깊은 애도속에서 엄숙하게 개최됐다.

순수하고 옳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불편한 뜻을 이끌고 참석하신 고 김낙성 동지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과 중앙본부 상집간부, 강북지방본부 김태호 위원장 및 조합간부, 고 김낙성동지 추모모임 대표 양한웅 동지를 비롯한 해고자 등지 그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열사

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식전행사를 마친후 가족과 참석하신 조합원 등지들께서 차례로 현화와 재배가 있었으며, 간단한 충성을 들면서 고 김낙성동지의 생전의 투쟁으로 화재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단일 근무복(하복) 5월말 지급완료 예정



12개 지방본부에서 선정된 노동조합 위원 및 회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34명의 단일 근무복 선정위원회들이 각 후보업체 제품에 대한 쟁상, 원단제작, 디자인, 선호도, 납기기일 등을 풀파악해 검토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에스트로' 제품으로 하게 입체복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마에스트로' 제품은 기본 소재로 실크 원료를 혼방한 둘(35%), 실크(23%), 폴리(42%) 소재의 원단에 기능성과 고급스러움이 강조되었고 구김이 없이 통풍성이 좋아 땀이 차지 않는 특징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한편 하계 일체복은 2003년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선정된 하계 일체복은 5월까지 지급을 원래 6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을 축하합니다.

KT 직원(계약직포함) 및 가족 의료행사 안내

명동안과 · 클리닉 스타즈 치과 등…무료 시술로 실시

노동조합에서는 직원(비 정규직 포함)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신뢰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병동안과 병원, 클리닉 스타즈 치과병원을 지정 병원으로 선정, 협력하여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정 병원 제휴기념으로 직원(비 정규직 포함) 및 가족분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조합원께 드리고자 노동조합과 지정병원의 협력 아래 특별행사를 마련했으니 화방 조합원에서는 의료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부장께서는 희망조합원을 수합하여 지방본부를 경유, 중앙본부 복지1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문의 : 복지1국장 031) 727-4824 fax: 02) 750-5404)

■ 명동 안과 병원

1. 홈페이지 : www.angwa.co.kr

(주소판에 "안과"를 입력해도 연결 가능)

2. 전화번호 : 02-777-5778-9, 771-8220-2

* 담당자 : 기획실장 김현재

3. 위치 :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2호선 을지로 일

구역 5.6번 출구

4. 진료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병원소개

- 1990년 국내 최초 애시미레이저 수술 시작

- 1995년 개인병원 국내 최초 라식수술 시작

- 자세한 사람은 홈페이지 참고

■ 클리닉 스타즈 치과 병원

1. 홈페이지 : www.clinicstars.com

2. 전화번호 : 02-3476-2879

* 담당자 : 원무과장 - 설병규

3. 위치 : 강남역 6번 출구 (뉴욕제과 병원) 파고다

타워 빌딩 14층

4. 진료시간 : 평일 오전 10:00~오후 09:00
토요일 오전 10:00~오후 05:00

■ 병원소개

- 임플란트, 교정, 보철, 예방, 치주 클리닉 등
치과 관련 전문병원

- 자세한 사람은 홈페이지 참고

■ 이용방법 : 가족이 이용 할 경우 임직원 성명으로 애와 / 의료보험증 지참

■ 접수기간 : 2004년 4월 12일 ~ 2004년 5월 10일 접수

■ 행사기간 : 2004년 5월 11일 ~ 2004년 6월 10일

■ 행사내용 < 노동조합 지원 >

◆ 인과 무료시술 행사 < 노동조합 지원 > : 직원(비 정규직 사원포함) 및 가족

1) 백내장 무료수술(단안) : 15명

2) 광끼풀 무료수술(양안) : 10명

◆ 치과 무료시술 행사 < 노동조합 지원 > : 직원(비 정규직 사원포함) 및 가족

1) 소아클리닉 충치예방 블로이온 도포 200명

2) 직원클리닉 충치예방 실린트 200명

◆ 유료시술 행사내용

■ 인과 : 행사기간 참가자 라식(시력교정) 수술 158명

■ 치과 : 행사기간 참가자 라식수술 시술비 6만원 또는 수입렌그라스 지급

■ 치과 : 기존 모든 치과진료비의 20% 혜택은 통일됨

▲ 행사 ① 교정치료시 행사기간 추가혜택 - 정밀 진단비용(20만원) 조합원지원

- 구강용품 set 증정
② 임플란트 시술시 행사기간 추가혜택 - 구강용품 set 증정

▲ 행사 2 : 미백 치료시 추가혜택

- 흰 브리핑 정상가 50만원 → 행사가 30만원

- 오피스 브리핑 정상가 80만원 → 행사가 50만원

김왕찬 동지 제8주기 추모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노동자의 아픔을 깨닫으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던 고 김왕찬 동지의 8주기 추모식이 3월 21일 10:00부터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 제주지방본부 위원장,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민주노동당 시지부 위원장 외 6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저지자 가족공동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노동의례에 이은 주도사에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동지에 뜻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성공의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고용안정의 그늘을 위해 당당하게 해쳐나감 것을 다짐하였다.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 삭제

지난 2월 "대체 휴일 부여 금지 노사합의(1999.3.27)에 따른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을 삭제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사는 인사시스템 휴일근무신청시 대체휴일란을 삭제하는 시스템 변경작업을 3월 31일자로 마무리 했다.

노동조합은 상호신뢰의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회사측에 심심한 사의를 전하며, 노사간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발전적이며 상호신뢰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앙상집 교류근무 및 인선

노동조합은 8대집행부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중앙상집의 적재적소 재배치를 통하여 중앙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2004년 임금교섭, 주 5일제 관련 단체협상의 승리를 위하여 중앙상집 교류근무 및 인선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 안창식 : 자문위원(전 정책기획실장)

■ 김화식 : 정책기획실장 서리(전 신입안전국장)

■ 최광수 : 기획관리국장(전 정책2국장)

■ 유대종 : 정책2국장(전 정책3국장)

■ 민재홍 : 산업안전국장(전 조직1국장)

■ 윤일성 : 조직1국장(전 조직3국장)

■ 김배정 : 조직2국장(전 교육국장)

■ 최경보 : 조직3국장(서부산지부)

■ 백관기 : 교육국장(전 조직2국장)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야 진보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수구보수세력으로 점철된 국회가

스스로 개혁을 불우짓기도 하는 웃기지도 않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판을 보면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식교육 때문에 이민까지 결심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육아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